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4 . . . (제 회)	

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
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4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·시행되는 바, 통관(通關)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4. 11. 13. ~ 12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

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혜대상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	
연 락 처	(044) 215 - 4461